
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3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, 지방공기업·출연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상기관 : 지방공기업평가원
- 나. 사무명 :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
- 다. 추진근거
 -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
- 라. 출연의 필요성
 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, 임직원교육, 경영지도·컨설팅, 정책연구 등 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

마. 주요사업 내용

-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
- 지방공기업(광역+기초)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
- 지방공기업·출연기관 컨설팅 지원
- 지방공기업 설립·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(법정전담기관)
-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

바. 출연대상 기관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, 12-6
- 법인설립 : 1992. 3. 2. ※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('16.6)
- 조 직 : 1본부 1실 2센터 / 정원 49명 ※현원 40명
 - 이사회 구성 : 이사 11명, 감사 1명 * 서울시 기획조정실장(당연직이사)
- 시설현황 : 건물(지상6층) 연면적 2,550㎡, 부지 640㎡
- 위치도



청사현황



위 치 도

사. 소요예산(안)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78,000천원
- 산출근거 : 경상운영비(기본급) 60,000천원,
시·도등 지원사업비 18,000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 엄인숙 (☎2133-6775)